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79 발의연월일: 2021. 3. 3.

발 의 자:정점식·이종성·이만희

박수영 · 김태호 · 권영세

임이자 · 조수진 · 김기현

지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안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해안가에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폐 기물이 해안가로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한해 약 15만 톤 이상의 해양 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2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적·기술적"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적·기술적"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한다.

-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운영
- 6.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에 필요한 조치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해양폐기물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감시원의 임명·자격·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
	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u>할 수 있다.</u>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자격, 위
	촉방법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u> 령으로 정한다.</u>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 <u>(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u>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지원) ①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u>재정적·기술적</u>	<u>행정적·재정적·기술적</u> -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
	지킴이의 위촉·운영
<u><신 설></u>	6.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
	의 재활용에 필요한 조치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	2
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u>재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재</u> <u>정적·기술적</u>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u>행정적·재정적·기술적</u>
③
<u>행정적·재정적·기술적</u>

- 제32조의2(해양폐기물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의 직 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 속 공무원을 해양폐기물감시원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감 시원의 임명·자격·직무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